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
----------	-----

제출년월일 : 2013.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통보 및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 위탁,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583명 → 591명(8명 증가)
- 집행기관의 정원 : 571명 → 579명(8명 증가)

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변경(안 별표2)

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3)

구 분	합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 존	583	277	12	128	32	134
조 정	591	286	12	133	24	136
증/감	8	9	-	5	△8	2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첨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라. 입법 예고 : 2013. 4. 9 ~ 4. 29 (20일간), 제출된 의견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바. 비용추계서 : 별첨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3명”을 “5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71명”을 “579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이내	26%이내	31%이내	27%이내	9%이상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6%이내	16%이내	23%이내	55%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6% 이내	94%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0%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91	59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91	491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0	2	4	1	8
6급 이하	462	462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1			1		
지도사	18	18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기능직 계	77	77				
기능6급 이하	77	7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u>583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71명</u></p> <p>2. (생 략)</p>	<p><u>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591명</u> ----- -.</p> <p>1. ----- <u>579명</u></p> <p>2.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583명에서 591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신규공무원 임용시 연간 인건비 증가분 산정함.
 - 신규공무원 1호봉 연간보수액은 20,000천원~25,000천원 수준임
 - 매년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률 감안하여 연간 25,000천원으로 계산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계		200,000	
공무원 인건비	25,000 × 8명	200,000	

다. 자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세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인건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자원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자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